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60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김기현·강명구·이만희
안철수·김정재·강대식
김미애·우재준·조정훈
임종득·백종현·박성훈
김재섭·김소희·임이자
박충권·서천호·김장겸
박성민 의원(19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기관·시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을 성범죄

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6조제1항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

제57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의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7호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제1항제2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취업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6. (생략)

<신설>

② ~ ⑨ (생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

1. ~ 26. (현행과 같음)

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

1. · 2. (생략) <u><신설></u>	1. · 2. (현행과 같음) <u>2의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u> <u>제1항제27호의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u> <u>기관·시설</u>
3. ~ 5. (생략) ② ~ ⑥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